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6. 26.>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는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평가를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갖추는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 대상	교육용기자재 등	수량
공통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소화기 실습·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평가설비 4. 응급처치 실습·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8. 가상체험장비 및 콘텐츠	각 1개 1식 3식 각 1개 각 1식 각 1개 1식 1식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평가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평가설비 5. 제연설비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1식 1식 1식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1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평가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평가설비	1식 1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1. 임시소방시설 실습·평가설비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1식 1식